#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#### 1. 개정이유

○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, 위원회 회의 및 서면의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O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윤리감사관을 행정관리실장으로 변경함 (안 제3조제1항)
- O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함 (안 제6조제1항)
- O 위원장은 서면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(안 제7조)

## 3.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윤리감사관"을 "행정관리실장"으로, "행정관리실장, 사법등기국장"을 "사법등기국장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서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안 제3조(구성)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법원행정체 ① -----차장을 위원장, 윤리감사관을 부위 ------ 행정관리실장-----원장으로 하고, 법원행정처 행<u>정관</u> ------ <u>사법</u> 리실장, 사법등기국장, 재판사무국 등기국장, ------장 및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하며, 위원 중 사 법등기국장을 주무위원으로 한다. ② ~ ③ (생략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 (회의) 제6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매월 1회 이상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를 소집하여 자격인정심사를 안건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에 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7조 (서면의결) 제7조 (서면의결) 위원장은 신청자가 「법무사법」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유지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서면 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데 의심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고, 다음 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무위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 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서면의 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인정심 결에 부할 수 있다.

사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

수 있다.

월이 경과된 자

- 1.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·정직을 받고 그 처 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
- 3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의하여 감봉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된 자
- 4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견책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
- 5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비위 사실이 아닌 다른 사유로 벌금 이 하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사안이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자

# 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